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885
------------	-----

발의연월일 : 2011. 2. 7.
발 의 자 : 김지근 외 2명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중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비롯한 축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상별규정, 프로그램 편성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원칙(안 제3조)
- 나. 예산지원 및 감독규정(안 제5조, 제6조)
- 다. 축제위원회 설치 · 운영 등(안 제10조 부터 제17조)
- 라. 축제평가 등(안 제18조 부터 제2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
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

제3조(기본원칙) 지역축제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①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에는 행사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구가 지원하는 모든 민간행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하되, 구청장이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에서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행사 위탁)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축제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구청장은 축제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축제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신규지원) 구청장의 신규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사진, 계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포함한 축제 추진 계획을 울산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겸직) 공무원이 맡은 기본적 직무 외에 행사 추진 민간 법인,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개최에 대한 일몰제 적용에 관한 결정사항
5. 그 밖에 축제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축제업무 담당국장 또는 부서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축제 전문가

 가.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강사급 이상 교수
 나. 공인된 이벤트 회사의 연출 2년 이상 경력자

2. 역사학계, 예술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문화예술인으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의 추구,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6조(협조) 위원회에서 축제와 관련하여 인력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구 관현부서와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평가대상) 축제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19조(평가기준) 축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사항, 참가자 반응 등

2. 운영·행사진행 전반,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등

3.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제20조(평가방법) 축제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 인센티브·페널티 적용) 위원회는 축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1. 80점 이상 : 다음해 축제경비 10~20% 증액

2. 61점 ~ 79점 이하 : 다음해 축제경비 10~20% 감액

3. 60점 이하 : 일몰(퇴출)

제22조(공개의 의무화) 축제 개최 후, 축제운영 예·결산 현황 및 축제수입금액,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85)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안 연 월 일 : 2012. 02. 13(월)
- 나. 제안자 : 김지근의원 외 2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2. 13(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2. 22(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영호 전문위원)

-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비롯한 축제 평가 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상별규정, 프로그램 편성 등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기본원칙(안 제3조)
- 나. 예산지원 및 감독규정(안 제5조, 제6조)
- 다. 축제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10조 내지 제17조)
- 라. 축제평가 등(안 제18조 내지 제21조)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2월13일 김지근의원을 비롯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한 조례안으로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축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축제의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기획, 실행, 평가단계에 있어 내실 있는 축제운영과 성장을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주요내용

- 안 제3조는 축제의 기본원칙이 되겠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축제예산 지원과 예산집행에 따른 수탁운영자에 대한 감독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7조는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18조 내지 제21조는 축제평가 등으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상별 규정이 되겠음

○ 결 론

- 지역축제가 지역발전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 주민 화합 등의 축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 구성 운영을 비롯해 축제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대한 상별 규정, 축제 프로그램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